

# 노동자를 배제한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 - 시·도 위원회 분석을 중심으로 -

박영민 민주노동연구원 연구위원

2023. 12. 11.



보고서는 민주노동연구원 홈페이지([kctuli.kctu.org](http://kctuli.kctu.org))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자료문의 :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 | 주소 : 04518 서울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3층

전화 : 02-2670-9221 팩스 : 02-2670-9299 전자우편 : [kctuli2020@gmail.com](mailto:kctuli2020@gmail.com)

민주노동연구원의 연구보고서 및 이슈페이퍼는 민주노총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목차

|                                          |    |
|------------------------------------------|----|
| 〈요약〉 .....                               | i  |
| 1. 서론 .....                              | 1  |
| 2.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시·도 조례 분석 ..... | 4  |
| 3. 시·도 처우개선위원회 설치·운영 현황 분석 .....         | 9  |
| 1) 개요 .....                              | 9  |
| 2) 시도 처우개선위원회 현황 분석 .....                | 11 |
| 4. 노동조합의 참여 배제 .....                     | 17 |
| 1) 법령상의 문제와 중앙위원회 구성의 편중 .....           | 17 |
| 2) 노동조합 참여에 대한 의도적 배제 .....              | 19 |
| 5. 결론 : 개선과제 .....                       | 21 |
| 참고문헌 .....                               | 24 |

# 요약

이 글은 2022년 6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률)’과 시행령 개정에 따라 중앙 및 지방정부에 설치된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논한다. 위원회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시·도(이하 시도)의 조례 체계를 분석하고 위원회 현황을 비판적으로 고찰하며 분석하였다.

2011년 제정된 법률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시설 노동자의 처우는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고 여전히 열악하다. 매년 보건복지부가 권고하는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대한 시도 준수율은 현재도 낮은 수준이다. 새롭게 설치되는 위원회는 이처럼 열악한 처우를 실질적으로 개선할 의무가 있다. 또 노동자의 참여를 충분히 보장하여 임금과 노동조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결정을 할 수 있는 기구여야 한다.

시도 조례 분석 결과, 법령 개정 이후 17개 시도 모두에서 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했다. 정보 공개를 청구한 2023년 8월을 기준으로 볼 때, 서울과 경남을 제외한 15개 시도에서 위원회 설치가 완료되었다. 위원회의 기능과 심의사항에 관한 조례 규정은 모든 시도가 대동소이하나, 종합계획 수립이나 실태조사 시행에 대한 심의가 명문화되지 않은 곳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회의 주기의 경우 11개 시도에서 명기하지 않아 보완이 요구된다.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대한 본격적인 분석 결과, 구성의 편중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5개 시도를 대상으로 공무원과 광역 의원을 제외한 위촉직 위원 143명에 대한 구성비를 살펴보면, 시설장 등(시설장, 각종 협회 및 협의회장)이 무려 53.8%를 차지하며 전문가(학자, 법률가) 34.3%, 시설 중간 관리자급(사무국장·부장·과장) 10.5%이며, 현장 노동자(사회복지사 및 선임)는 1.4%에 그쳤다. 현장 노동자를 위촉한 유일한 시도인 대전광역시도 조례로 구성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곳이었다. 만약 시설 중간관리자를 현장 노동자에 포함하더라도 비중은 전체 위원 10명 중에서 1명꼴에 불과하다.

불균형한 구성의 원인은 시행령의 모호한 규정 탓으로 풀이된다. 여타 행정기관위원회에서 ‘노동자단체’나 ‘총연합단체’에 추천권을 부여한 사실과 다르게, 처우개선위원회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단체’, ‘사회복지법인 등으로 구성된 단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관련 시

민단체’ 등이 추천하도록 정하였다. 그 결과 시도마다 추천 단체에 대한 해석이 제각각 다르고 범주 구분이 불명확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보건복지부에 설치된 중앙위원회도 마찬가지로 처우개선 사업의 당사자인 노동자는 없으며 ‘시설장 등’에 편중된 구조이다.

현재와 같이 위원회의 불균형적인 구성은 직위별로 다른 호봉 기준이 존재하는 임금체계 하에서 사용자의 입장을 과잉 대표하며, 현장 노동자에게 차별적인 논의를 조장하거나 방지할 우려가 있다. 또 처우개선위원회에 정작 처우개선의 당사자가 포함되지 않아 심각한 수준으로 대표성과 당사자성을 상실하였다.

법령 개정과 위원회 구성에 있어 노동조합을 의도적으로 배제한 사실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민주노총은 법 개정 이전에 ‘사회복지사 등’을 조직하여 활동하는 전국 단위 노동조합이나 총연합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추가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개정 법령 시행 이후에도 보건복지부의 요청에 따라 위원을 추천하였으나 모두 무시된 바 있다. 이러한 흐름은 현 정부의 노동계 무시와 퇴행적인 거버넌스 정책과 궤를 같이한다.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 양상은 행정기관 위원회에서 양대노총을 배제하는 움직임으로도 나타났다. 그동안 양대노총이 참여하던 위원회에서 갖가지 이유로 배제하거나 새롭게 위원회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따돌린 것이다. 당사자 이익을 대표하면서 정부 주도의 결정을 비판하는 세력인 노동조합은 정부위원회에서 배제의 대상이 되고 있다.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개선이 필요하다. 첫째, 위원회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하여야 한다. 역사적으로 노동자의 저임금 상황을 상수로 두고 성장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비판적으로 고찰해야 한다. 법률 제정에도 불구하고 적정 임금 보장 등 처우가 개선되지 못한 현실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사명이 위원회에 있다. 특히 사용-종속 관계의 모호성으로 인해 노동기본권이 제약받는 사회복지 노동자의 임금 및 노동조건을 민주적으로 논의하고 결정하는 기구가 되어야 한다.

둘째, 노동조합의 참여를 명문화하고, 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위원회가 단지 형식적인 기구에 머무르지 않고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인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처우개선의 당사자이자 노동 주체를 배제하는 현재의 법령과 자치법규에 대한 전면 개정이 요구된다. 단기적으로는 보건복지부가 시도마다 겪는 혼선을 방지하고 현장 노동자의 참여를 향상하기 위한 행정규칙을 만들 필요가 있다. 나아가서 실질적인 처우개선, 즉 노동권 문제를 제대로 심의하기 위해서는 행정기관 결정에 기속을 갖는 성격으로 위원회를 전환해야 할 것이다.

## 1. 서론

###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 법제화

○ 2022. 6. 2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률)」 개정안 시행

- 개정 법률 요지 : 신설하는 처우개선위원회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을 심의하는 기능을 부여하며 보건복지부와 시·도(이하 시도), 시·군·구(이하 시군구)에 각각 두도록 함.<sup>1)</sup>
- 개정 이유 요약 : “현행법은 국가와 지자체의 의무사항으로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적정화를 비롯한 처우개선, 복지증진, 지위 향상을 위한 노력 의무를 명시하고 있음. 이에 처우개선 사항을 논의하는 처우개선위원회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처우 및 지위 향상 기여,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 한편, 이 법률의 적용 대상은 ‘사회복지사 등’으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에서 종사하는 노동자, 그리고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으로 정한 한국사회복지공제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등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에서 일하는 노동자임. 전국의 사회복지시설 24,000여 개소에 약 61만 명이 고용되어 있지만 (2021년 현재),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보육교사와 장기요양요원 등은 제외하여 실질적인 적용 대상 규모는 약 10만 명으로 추정.

○ 중앙 및 지역 차원의 위원회 설치 개시

- 시행령은 법률 제3조2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두는 위원회(중앙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시도 및 시군구에 두는 위원회(지역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도 시행령에서 규정하며, 법률에서는 각 자치단체의 조례로도 정하도록 함.
- 이에 따라 지난해부터 각 시도의 조례 개정과 지역위원회 설치가 연이어 개시.

1) 법률 제3조의2(처우개선위원회) 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각각 처우개선위원회를 둔다. 다만, 시·군·구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2. 제3조제3항에 따른 적정 인건비 기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③ 보건복지부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시·도 및 시·군·구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 □ 어떠한 위원회가 되어야 하는가?

### ○ 열악한 처우를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가?

- 역사적으로 사회복지서비스는 노동자의 저임금 체계를 고착하며 성장.
- 2011년 법률 제정 : 적정 인건비 기준에 대한 국가 책임과 지자체 준수 노력 명시.
- 이후 매년 보건복지부는 인건비 가이드라인 발표, 그러나 여전히 임금수준이 낮음. 4급<sup>2)</sup> 1호봉 기본급(월)은 2021년 1,910,300원, 2022년 1,989,200원, 2023년 2,073,500원으로 거의 최저임금 수준에 가깝고 일부 시도가 정하는 생활임금 기준에는 미달하는 실정.
- 법률에 따라 3년마다 보수 수준 및 지급 실태 · 인건비 기준에 따른 지자체별 준수율 등 조사 · 공표함. 그러나 무려 12개 시도의 인건비 수준이 복지부 가이드라인에 미달(2020년 실태조사). 즉 법률 제정에도 불구하고 실효가 미비하고 현장의 체감도가 매우 낮음.<sup>3)</sup>
- 신설되는 위원회는 열악한 사회복지 노동자 처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 ○ 임금 및 노동조건에 대한 심의 · 결정이 가능한가?

- 사회복지사 등은 제도상 모호한 사용-종속 관계에 있으므로 사실상 임금 교섭이 불가하고 노동기본권이 제한되어 왔음.<sup>4)</sup> 집단적 노사관계의 정상적인 작동을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정부-노동조합 간 초기업교섭 구조가 마련될 필요.
- 그렇지만 노정 교섭을 달성하기 어려운 조건에서 현실적 방안으로 위원회의 순기능을 고려. 임금 및 주요 노동조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가 이뤄져야 할 것.

### ○ 노동자의 충분한 참여가 보장될 것인가?

- 제도의 관건은 노동자를 비롯한 이해당사자의 참여 보장 정도에 있음. 법률의 직접적인 적용대상인 ‘사회복지사 등’을 대표하거나 대변하는 위원을 위원회에 다수 포함하여야 할 것.

### ○ 돌봄 노동 전반에 적용할 근거가 될 수 있는가?

- 사회복지서비스 업종 전반에서 법률로 적정 임금 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한 정부 의무를 명기한 직종은 ‘사회복지사 등’이 유일. 따라서 이들의 임금수준과 임금체계는 여타 돌봄 직종에도 일종의 길잡이 역할을 하는 것이 사실.<sup>5)</sup>

2) (이용시설) 사회복지사, (생활시설) 생활지도원

3) 2021 사회복지사 통계연감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 보수체계의 문제점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 49.7%가 ‘보수수준 자체가 낮음’, 16.1%는 ‘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이라고 응답.

4)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시설장 등은 직접적으로 임금을 결정할 권한이 없다고 보는 게 맞으며,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장은 법적으로 사용자 지위가 인정되지 않고 있음.

5) 본 연구원에서 올해 실시한 ‘방문 돌봄 노동자 임금체계 마련을 위한 기초연구’에서도 임금체계 대안 중 하나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용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노동자 참여 구조 도입을 위해서 사회복지

- 향후 돌봄 노동 전반에 관한 논의에 있어 위원회는 유용한 기제가 되어야 할 것.

## □ 분석 목적

- 2022년 개정된 법령에 따라 신설되는 위원회, 특히 시도 단위의 위원회가 어떠한 조례 체계에 기초하여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분석함으로써 당사자와 노조의 참여가 올바르게 보장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것임. 이를 통해 위원회의 개선과제와 방안을 제시하며, 사회복지 노동을 비롯한 돌봄 노동이 가진 취약한 노동기본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참여 구조를 모색.

## □ 분석의 대상과 방법

### ○ 분석 대상

- ① 17개 시도의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 ② 시도 처우개선위원회 설치·운영 현황
- 시도를 분석 대상으로 정한 이유 : 지방이양시설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관리·감독을 행사하는 주체이며, 재원 유형을 막론하고<sup>6)</sup> 대부분 광역 단위로 처우개선안이 수립되기 때문.

### ○ 분석 방법 및 구성

- ① 각 시도 조례 개정안 : 내용분석(content analysis)<sup>7)</sup> -2장
- ② 위원회 구성 : 보건복지부 및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한 정보공개 청구(open.go.kr) 결과를 바탕으로 세부 구성 현황 분석<sup>8)</sup> -3장

[표 1] 조례 및 위원회 분석 틀

| 구분            | 분석내용            | 세부내용                                               |
|---------------|-----------------|----------------------------------------------------|
| 시도<br>조례      | 조례 일반사항 및 개정 시기 | · 조례명, 조례 최초 제정일, 위원회 조항 신설 개정일                    |
|               | 위원회 일반사항        | · 위원회 목적 및 기능<br>· 위원회 심의사항 : 처우개선, 종합계획, 실태조사, 기타 |
|               | 위원회 구성요건        | · 인원, 구성요건, · 임기, 회의 주기, 위·해촉                      |
| 시도<br>처우개선위원회 | 설치현황            | · 시행령 요건에 따른 현황, · 추천 단체                           |
|               | 세부 구성 및 운영 현황   | · 세부 구성비, · 주요 추진사항                                |

주: 2023년 7월에 신청한 정보공개청구의 결과는 2023년 7월 27일부터 8월 22일까지 순차적으로 통지받음

사 등 처우개선위원회 방식을 참고할 것을 제안한 바 있음

- 6) 사회복지시설은 재원 유형에 따라 국비지원시설(국비 70%, 지방비 30%)과 지방이양시설(지방비 100%)로 구분되며, 각각의 인건비 기준은 다른 경우가 많음. 또 설립 주체에 따라 국공립시설(공공직영, 민간위탁)과 민간직영시설로 나뉘는데 정부 보조금을 매개로 한 민간위탁 체제라는 점은 같다고 볼 수 있음.
- 7) 내용분석은 정성적 자료를 범주화·계량화하여 특정 시기의 단면적 특징을 파악하는 데 유용(최성호 외, 2016).
- 8) 청구 항목 ① 처우개선위원 추천 단체, 피추천인, 선정·탈락인 명단, 임기 ② 위촉 근거 ③ 위원회 추진사항(회의 심의사항, 참석자, 회의록) ④ 예정된 회의 일정과 안건 ⑤ 노동조합 추천 여부

## 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시도 조례 분석

### □ 모든 시도 조례 개정으로 처우개선위원회 설치·운영 근거 마련

#### ○ 법령 개정에 뒤따른 시도 조례의 개정

- 2011년 법률 제정 이후 이에 기초한 광역 단위의 조례가 2012년 5월(경기)부터 2014년 3월(서울)까지 모든 시도에 걸쳐 제정 완료.
- 이번 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위원회 설치·운영 관련)은 2023년 3월 24일 제주를 마지막으로 모든 시도에서 마무리됨(표 2). 한편 조례 조항은 대체로 강행규정(~해야 한다), 노력규정(~노력해야 한다), 임의규정(~할 수 있다)으로 규정 형태가 나뉘는데, 위원회 설치의 경우 법령에서 정한 사항으로서 모든 지자체에서 강행규정으로 정할 의무가 있음.
- 조례 개정 시점은 개정 법률 시행일(2022.6.22.) 전후로 구분. 대구 외 7개 시도는 이미 조례에 위원회 관련 조항이 강행규정이었으므로 별도의 개정이 필요하지 않았음. 반면, 서울 등 9개 시도는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조항을 신설하거나 기존의 임의·노력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변경. 예컨대 서울의 경우 기존 조례에서 임의 기구이던 ‘정책자문위원회’ 조항을 폐지하고, 강행규정 형태로 ‘처우개선위원회’ 조항을 신설.

[표 2] 시도 조례 현황

| 시도 | 조례명                                 | 제정일         | 개정 조례<br>시행일 <sup>1</sup> | 위원회명             | 법령 개정 <sup>2</sup> |    |
|----|-------------------------------------|-------------|---------------------------|------------------|--------------------|----|
|    |                                     |             |                           |                  | 이전                 | 이후 |
| 서울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 2014.03.20. | 2022.12.30.               | 처우개선위원회          |                    | ○  |
| 부산 |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 | 2012.09.26. | 2023.03.01.               | 사회복지사처우개선위원회     |                    | ○  |
| 대구 | 대구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 2012.12.31. | 2012.12.31.               | 사회복지사처우개선위원회     | ○                  |    |
| 인천 |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 2013.02.21. | 2022.12.30.               | 사회복지사처우개선위원회     |                    | ○  |
| 광주 | 광주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 2013.05.01. | 2020.04.01.               |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  | ○                  |    |
| 대전 | 대전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 2013.08.16. | 2013.08.16.               |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  | ○                  |    |
| 울산 | 울산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 2013.06.28. | 2018.12.27.               |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위원회    | ○                  |    |
| 세종 |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 2013.02.20. | 2022.11.14.               |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  |                    | ○  |
| 경기 |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 2012.05.11. | 2020.11.12.               |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 위원회 | ○                  |    |

| 시도 | 조례명                                | 제정일         | 개정 조례 시행일 <sup>1</sup> | 위원회명                  | 법령 개정 <sup>2</sup> |    |
|----|------------------------------------|-------------|------------------------|-----------------------|--------------------|----|
|    |                                    |             |                        |                       | 이전                 | 이후 |
| 충북 | 충청북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 2013.12.27. | 2022.10.14.            |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       |                    | ○  |
| 충남 | 충청남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 2013.07.30. | 2022.12.30.            |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       |                    | ○  |
| 전북 | 전라북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 2013.06.07. | 2015.10.12.            | 사회복지사 지원협의회           | ○                  |    |
| 전남 | 전라남도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 2013.04.05. | 2022.12.29.            |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위원회         |                    | ○  |
| 경북 | 경상북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 2012.09.27. | 2021.09.23.            |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위원회 | ○                  |    |
| 경남 | 경상남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 2012.11.01. | 2019.12.26.            | 사회복지사처우개선 위원회         | ○                  |    |
| 강원 | 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 2013.07.12. | 2022.06.22.            |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위원회     |                    | ○  |
| 제주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 2013.03.20. | 2023.03.24.            |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       |                    | ○  |

- 주<sup>1</sup> : 조례 개정 기준은 강행규정으로 처우개선위원회 설치 사항을 정함을 의미  
- 주<sup>2</sup> : 개정 법률 시행일인 2022년 6월 22일 기준으로 개정 조례 시행 시점을 구분

## □ 시도 조례에서 규정한 위원회 기능 및 심의사항

### ○ 목적과 기능 : 처우개선 등 심의

- 시행령에서 지역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명시하고 있는 만큼<sup>9)</sup>, 조례에서도 위원회의 목적 및 기능으로 ‘처우개선 등의 심의’로 정한 곳이 대부분.
- 그러나 대구, 경기, 전북, 경남, 경북의 경우 위원회 기능으로 ‘자문, 도지사 자문 응대’ 등 다소 애매하거나 미미하게 명시되었는데, 모두 법률 개정 이전에 위원회가 존재하던 곳임. 반면, 광주와 전남은 심의 의결 기능까지 포함.

### ○ 심의사항 : 종합계획 및 실태조사에 대한 심의 의무화 필요

- 시행령에서 심의사항으로 규정하는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은 모든 시도에서 심의사항으로 채택하고 있음.
- 그리고 모든 시도에서 강행규정으로 두고 있는, ‘매 3년마다의 종합(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

9) 시행령 제4조의5(시·도 및 시·군·구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3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이 조 및 제4조의6에서 “지역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항을 심의하도록 하는 곳은 대구 등 13개 시도임. 또 제주(임의)를 제외한 16개 시도에서 강행 규정으로 존재하는, ‘실태조사’에 대한 심의 기능이 있는 곳은 광주 등 6개 시도에 불과. 실질적인 처우개선 심의를 위해서는 종합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심의 기능을 의무화해야.
- 한편, 대구, 인천, 충남, 강원은 처우개선 조례 외 여타 관련 조례 관련 사항도 함께 심의.

[표 3] 시도 조례 처우개선위원회 기능 및 심의사항

| 시도 | 목적 및 기능             | 심의사항           |                      |                     |          |                                                         |
|----|---------------------|----------------|----------------------|---------------------|----------|---------------------------------------------------------|
|    |                     | (시행령 규정)       |                      | 종합<br>(지원)계<br>획 수립 | 실태<br>조사 | 기타                                                      |
|    |                     | 처우<br>개선<br>사항 | 그 밖의<br>처우개선<br>등 사항 |                     |          |                                                         |
| 서울 | 심의                  | ○              | ○                    |                     |          |                                                         |
| 부산 | 심의                  | ○              | ○                    |                     |          |                                                         |
| 대구 | 시책 자문               | ○              | ○                    | ○                   |          |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 및 인권보호 조례 제6조 제1항 각호에 관한 사항                 |
| 인천 | 심의                  | ○              | ○                    |                     |          | 사회복지종사자 인권보호와 건강한 사회복지현장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항 각 호의 사항 |
| 광주 | 심의·의결               | ○              | ○                    | ○                   | ○        |                                                         |
| 대전 | 심의                  | ○              | ○                    | ○                   | ○        |                                                         |
| 울산 | 심의                  | ○              | ○                    | ○                   | ○        |                                                         |
| 세종 | 심의                  | ○              | ○                    | ○                   |          |                                                         |
| 경기 | 도지사 자문 응대           | ○              | ○                    | ○                   |          |                                                         |
| 충북 | 심의                  | ○              | ○                    | ○                   |          |                                                         |
| 충남 | 심의                  | ○              | ○                    | ○                   |          | 신분 및 인권보장                                               |
| 전북 | 자문                  | ○              | ○                    | ○                   |          |                                                         |
| 전남 | 심의·의결               | ○              | ○                    |                     |          |                                                         |
| 경북 | 자문                  | ○              | ○                    | ○                   |          |                                                         |
| 경남 | 자문                  | ○              | ○                    | ○                   | ○        |                                                         |
| 강원 | 시책 추진, 민관 상호협의 및 대응 | ○              | ○                    | ○                   | ○        | 지자체와 기관 간의 협의·조정 사항, 처우개선 선진사례 적용방안                     |
| 제주 | 심의                  | ○              | ○                    | ○                   | ○        |                                                         |

## □ 위원회 구성요건 비교

### ○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지역위원회 구성요건

- 중앙위원회의 구성과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규정.

시행령 제4조의5(시·도 및 시·군·구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의 구성 등)

② 지역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 ③ 지역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④ 지역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각 지역위원회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2. 다음 각 목의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 가.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단체
    - 나. 사회복지법인등의 장으로 구성된 단체
    - 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관련 시민단체
  - 3.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등 노동 관계 법령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 4.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이에 따라 시도 조례는 대부분 시행령과 동일한 조문을 채택하거나 시행령을 따를 것을 명시. 즉 위원의 자격요건은 첫째 처우개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둘째 ‘각 목(가~다)의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셋째 노동관계 법령 전문가, 넷째 담당 공무원이며, 지자체의 장이 최종 임명·위촉.

#### ○ 시도별 위원회 구성요건 비교

- 시도별로 정한 위원회 구성요건은 [표 4]와 같음.
- 법률 개정 이전에 이미 조례에 위원회를 규정하고 운영하던 곳은 시행령의 조문과 차이를 보이기도 함. 예컨대 ‘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협의회’와 같이 구체적인 단체명을 명시하거나 (대구, 울산, 전북, 경북),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자를 포함(경기). 다소 추상적인 시행령의 요건에 비해서는 구체성을 띠지만 전반적으로 대동소이.
- 다만 대전은 구성 비율을 정했다는 점에서 여타 시도와 다름. 사회복지기관의 장과 기관 직원을 각각 30% 이상씩,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은 30% 이하로 두면서 기관장과 직원(노동자)의 참여를 일정 비율 이상 보장. 이는 전문가보다 현장 참여를 높이려는 의도로 보임.

#### ○ 위원회 회의 주기 및 임기 (표 5)

- 위원회 회의 주기 명시 : 광주, 경북, 대구, 대전, 울산, 충남  
참고로 시행령에서는 회의 주기를 따로 정하고 있지 않으며 위원장의 소집 등 소집 요건만 갖추. 정기적인 회의 개최를 위해서는 회의 주기를 명시할 필요.
- 위원회 임기와 해임·해촉에 관한 사항 : 시도마다 다름. 다만 시행령 제4조의6에서 이 사항에 관하여서는 시행령 규정을 준용할 것을 명시. 그러므로 대체로 위원의 임기는 2년, 연임은 1회만 가능.

[표 4] 시도 조례 처우개선위원회 구성 요건

| 시도 | 인원        | 처우개선위원 구성 요건                                                                                                      |                                                                                                  |        |              |                                                       |
|----|-----------|-------------------------------------------------------------------------------------------------------------------|--------------------------------------------------------------------------------------------------|--------|--------------|-------------------------------------------------------|
|    | 시행령 명시 사항 |                                                                                                                   |                                                                                                  |        |              | 기타                                                    |
|    | 15명<br>이내 | 학식, 경험                                                                                                            | 단체 추천 <sup>1</sup>                                                                               | 법률 전문가 | 공무원          |                                                       |
| 서울 | ○         | ○                                                                                                                 | ○                                                                                                | ○      | ○            |                                                       |
| 부산 |           | ○                                                                                                                 | ○                                                                                                | ○      | ○            |                                                       |
| 대구 |           | ·사회복지기관의 장 ·사회복지기관의 종사자 ·시 사회복지사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br>·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급 이상 시 공무원                  |                                                                                                  |        |              |                                                       |
| 인천 |           | ○                                                                                                                 | ○                                                                                                | ○      | ○            |                                                       |
| 광주 |           | ○                                                                                                                 | ○                                                                                                | ○      | ○            | ·시의원, 「광주광역시 복지협치<br>기본조례」 제10조에 따른<br>분과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
| 대전 |           | 30% 이하                                                                                                            | ·사회복지기관의 장(30%이상) ·사회복지기관의 직원(30%이상)                                                             |        |              |                                                       |
| 울산 |           | ○                                                                                                                 | ·사회복지기관의 장 또는 사회복지사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급이상 공무원<br>·시 사회복지사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        |              |                                                       |
| 세종 | 10명<br>이내 | ·사회복지법인 등의 장 ·사회복지 및 근로복지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br>·담당 국장·과장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br>인정되는 사람 |                                                                                                  |        |              |                                                       |
| 경기 |           | ·사회복지사 등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대표자 ·사회복지기관 또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이용자<br>·사회복지 관련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사람 ·도의원 ·과장급 이상 담당 공무원              |                                                                                                  |        |              |                                                       |
| 충북 | ○         | ○                                                                                                                 | ○                                                                                                | ○      | ○            |                                                       |
| 충남 |           | ○                                                                                                                 | ○                                                                                                | ○      | ○ (3급이상)     |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또는<br>사회복지 관련 전문가                     |
| 전북 |           | ○                                                                                                                 | ·사회복지기관의 직원 ·사회복지기관의 장<br>·시 사회복지사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        |              |                                                       |
| 전남 |           | ○                                                                                                                 | ○                                                                                                | ○      | ○<br>(과장급이상) |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
| 경북 |           | ○                                                                                                                 | ·사회복지기관의 장 ·사회복지기관의 종사자 ·시 사회복지사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br>·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급 이상 시 공무원 |        |              |                                                       |
| 경남 |           | ○                                                                                                                 | ·사회복지기관의 장 ·4급 이상 시 공무원                                                                          |        |              |                                                       |
| 강원 |           | ○                                                                                                                 | ·사회복지기관 또는 사회복지시설 대표 ·담당과장 ·도의원                                                                  |        |              |                                                       |
| 제주 |           | ○                                                                                                                 | ○                                                                                                | ○      | ○            |                                                       |

- 주 : ○은 시행령의 조문과 같다는 의미임. 또 인천과 제주의 경우 시행령을 따른다고만 명시

- 주<sup>1</sup> : 시행령 제4조의5 제4항제2호 가.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단체, 나. 사회복지법인등의 장으로 구성된 단체, 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관련 시민단체

[표 5] 위원회 회의 주기, 해임·해촉, 임기

| 조항       | 유                                                                                                      | 무                                          |
|----------|--------------------------------------------------------------------------------------------------------|--------------------------------------------|
| 회의 주기    | -연 2회 이상 : 광주<br>-연 2회 : 경북<br>-연 1회 : 대구, 대전, 울산, 충남                                                  | 서울, 부산, 인천, 세종, 경기, 충북, 전북, 전남, 경남, 강원, 제주 |
| 위원 해임·해촉 | 서울, 부산, 울산, 세종, 경북, 경남, 강원                                                                             |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제주     |
| 임기       | -2년(1회만 연임):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세종, 경기, 충북, 충남, 전남, 경남, 강원<br>-2년(연임 가능): 울산, 전북<br>-2년(연임 규정 없음): 경북 | 인천, 제주                                     |

- 주 : 인천과 제주의 경우 시행령을 따른다고만 명시

### 3. 시도 처우개선위원회 설치·운영 현황 분석

#### 1) 개요

- 이 장에서는 2023년 시도별 처우개선위원회 설치·운영 현황을 분석. 이를 위해 2023년 7월에 대한민국 정보공개 포털([www.open.go.kr](http://www.open.go.kr))을 통해 17개 시도 및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정보공개를 청구. 그 결과는 2023년 7월 27일부터 8월 22일까지 순차적으로 통지받았으며, 이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를 제시.<sup>10)</sup>

#### □ 행정기관위원회 및 지방자치단체 위원회의 개념

##### ○ 행정기관위원회의 개념 및 현황<sup>1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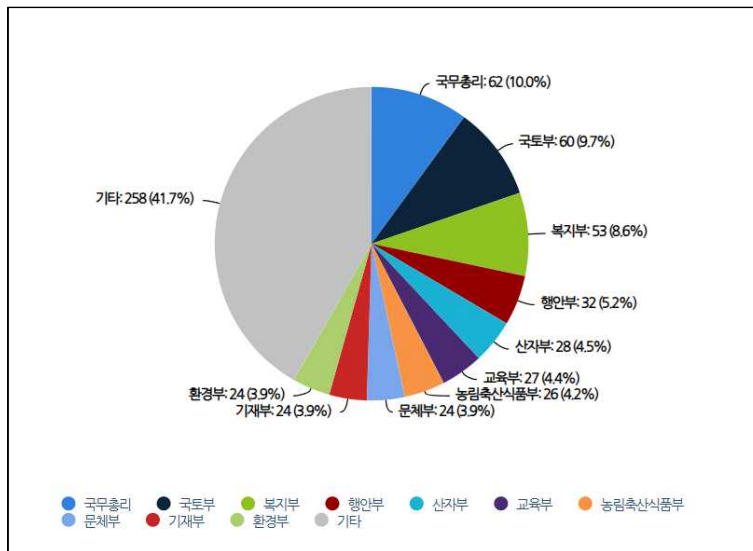
- 행정기관위원회는 행정기관 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해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뤄진 합의제 기관. 유형은 크게 행정위원회(Administrative Committee)와 자문위원회(Advisory Committee)로 구분. 행정위원회는 소관사무에 대한 독립적 수행이 가능한 점이 핵심이며 행정·준입법·준사법 기능을 보유하거나 행정 권한을 직접 행사할 수 있

10) 보건복지부는 기존에 공개된 자료 외에는 모두 비공개를 통보한 바 있음. 그 근거로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라는 점을 제시하였음

11) 정부조직관리정보시스템 사이트(<https://www.org.go.kr>) 참고

- 음. 대표적인 기구는 중앙노동위원회, 고용보험심사위원회 등.
- 자문위원회는 이러한 행정위원회를 제외한 모든 위원회를 지칭. 행정기관 의사결정을 지원하지만 대외적으로 표명하는 권한은 없음. ‘업무내용이 전문가 의견 등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거나 업무성질이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 그리고 위원회 결정사항의 행정기관 기속 여부에 따라 의결위원회(與), 심의위원회(否)로 구분.<sup>12)</sup>
  - 이 글에서 다루는 처우개선위원회의 경우 자문위원회에 속하면서, 결정사항이 행정기관에 기속되지 않으므로 심의위원회로 분류. 법률에 근거하며 소관부처는 보건복지부임. 현재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행정기관위원회는 행정위원회 1개, 자문위원회 58개임. 한편, 행정기관위원회의 전체 현황은 [그림 1]과 같음.

[그림 1] 행정기관위원회 소속별 현황



- 자료 : [www.org.go.kr/intrcn/system/viewCmit.do](http://www.org.go.kr/intrcn/system/viewCmit.do)

- 주 : 2023년 9월 기준

### ○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 지방자치단체 소속 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129조(합의제행정기관)와 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sup>13)</sup>에 근거. 행정기관위원회와 비교하면 전자는 행정위원회, 후자는 자문위원회와 성격이 유사. 이 글에서 다루는 시도 처우개선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근거를 둔 자문기관에 해

12) 결정사항이 행정기관을 법적으로 기속하는 의결위원회의 대표적인 예로 최저임금위원회가 있음

13) 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당하며, 법령(사회복지사법 및 시행령)의 강행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것.

- 지방자치단체 위원회에서 두드러지는 특성은 지역의 정책 전문가 참여 빈도가 높다는 것임. 일반적으로 정책 전문성 강화 · 지역 거버넌스 구축 등의 장점과 더불어 의사결정의 지연이나 책임 전가 현상 등의 단점이 있다고 볼 수 있음(김태운, 2019).

## 2) 시도 처우개선위원회 현황 분석

### □ 시도 위원회 설치현황

#### ○ 시도 위원회 설치 및 구성 현황

[표 6] 시도별 위원회 설치현황 (단위: 명, %)

| 시도 | 위원회<br>설치 | 기존/<br>신규 | 인원           |              |              |             |              |             | 최근<br>위촉일자  |
|----|-----------|-----------|--------------|--------------|--------------|-------------|--------------|-------------|-------------|
|    |           |           | 계            | 학식<br>경험     | 단체<br>추천     | 법률<br>전문가   | 공무원          | 기타          |             |
| 서울 | ×         | 신규        | -            |              |              |             |              |             | -           |
| 부산 | ○         | 신규        | 15           | 2            | 8            | 1           | 4            |             | 2023.03.14. |
| 대구 | ○         | 기존        | 13           | 2            | 4            | 1           | 6            |             | 2022.01.01. |
| 인천 | ○         | 신규        | 15           | 2            | 7            | 2           | 4            |             | 2023.02.01. |
| 광주 | ○         | 기존        | 15           | 1            | 9            | 1           | 2            | 1           | 2023.07.10. |
| 대전 | ○         | 기존        | 15           | 3            | 10           |             | 1            | 1           | 2022.10.13. |
| 울산 | ○         | 기존        | 15           | 6            | 6            |             | 2            | 1           | 2022.01.01. |
| 세종 | ○         | 신규        | 10           | 1            | 6            |             | 2            | 1           | 2023.04.24. |
| 경기 | ○         | 기존        | 10           | 6            | 2            |             | 1            | 1           | 2023.06.13. |
| 충북 | ○         | 신규        | 10           | 2            | 4            | 1           | 2            | 1           | 2023.04.17. |
| 충남 | ○         | 신규        | 11           | 3            | 4            | 1           | 1            | 2           | 2023.03.28. |
| 전북 | ○         | 기존        | 13           | 2            | 9            |             | 1            | 1           | 2023.07.01. |
| 전남 | ○         | 신규        | 13           | 2            | 6            | 1           | 2            | 2           | 2023.04.10. |
| 경북 | ○         | 신규        | 13           | 2            | 7            |             | 3            | 1           | 2023.02.14. |
| 경남 | ×         | 신규        | -            |              |              |             |              |             | -           |
| 강원 | ○         | 기존        | 13           | 3            | 5            |             | 4            | 1           | 2021.12.07. |
| 제주 | ○         | 신규        | 11           | 2            | 6            | 2           | 1            |             | 2023.07.01. |
| 계  |           |           | 192<br>(100) | 39<br>(20.3) | 93<br>(48.4) | 10<br>(5.2) | 36<br>(18.8) | 13<br>(6.8)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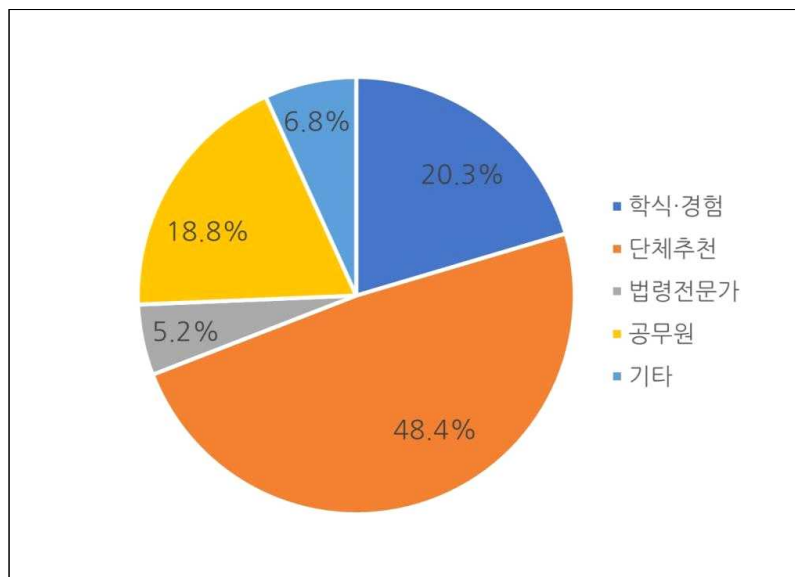
- 주: 법률 개정 전에 위원회가 있던 곳은 '기존', 최근 조례 개정으로 신규 설치된 곳은 '신규'로 분류함

- 분석 대상: 정보공개 시점에서 위원회가 설치된 15개 시도 (분석에서 제외한 서울, 경남은

2023년 하반기 설치 예정으로 답변).

- 한편, 법률 개정 이전에 이미 자치법규에 따라 위원회를 운영하던 시도는 7개(기존), 법률 개정  
에 따른 조례 개정으로 신규 설치한 시도는 10개(신규).
- 각 시도의 위원회 인원은 10명에서 15명. 전국 시도의 위원을 모두 합하면 총 192명.
- 시행령 제4조의5에서 명시한 위원 자격요건에 따른 구성비를 살펴보면, ①사회복지사 등의 처  
우개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9명(20.3%), ②각 목의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93  
명(48.4%), ③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등 노동관계 법령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10  
명(5.2%), ④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6명  
(18.8%), ⑤기타 13명(6.8%).

[그림 2] 시행령 자격요건별 시도 처우개선위원 구성 현황



- 자료 : 저자 작성

## □ 시도 위원회 운영 현황(표 7)

### ○ 시도 위원회 회의 개최 현황

- 2022년 1월부터 현재(정보공개 시점)까지 위원회 회의 개최 현황  
1회 이상 회의 : 부산 등 10개 시도 (2회 : 부산, 대구, 대전, 울산)  
회의 미개최 : 광주, 충북, 전북, 경북, 제주. (2023년 2월~7월에 위원회 위촉이 완료)

### ○ 위원회 심의사항

- 종합(지원)계획 또는 처우개선안 심의 : 부산 등 9개 시도.
- 실태조사 또는 처우개선 관련 연구 심의 : 부산, 대전, 세종, 충남(4개 시도).

[표 7] 시도별 위원회 추진사항

| 시도 | 종합(지원)계획              | 실태조사 및 연구 | 기타       | 회의일자<br>(2022년~현재)        |
|----|-----------------------|-----------|----------|---------------------------|
| 서울 | 미설치                   |           |          |                           |
| 부산 | ○                     | ○         | 위원회 운영방안 | 2022.10.24. / 2023.04.10. |
| 대구 | ○                     |           |          | 2022.04.22. / 2023.04.18. |
| 인천 | ○                     |           |          | 2023.03.07.               |
| 광주 | 2021.05.26.이후로 회의 미개최 |           |          |                           |
| 대전 | ○                     | ○         |          | 2022.07.11. / 2022.12.19. |
| 울산 | ○                     |           |          | 2022.04.15. / 2023.04.14. |
| 세종 | ○                     | ○         |          | 2023.05.17.               |
| 경기 | ○                     |           |          | 2022.12.21.               |
| 충북 | 미개최 (23년 하반기 개최 예정)   |           |          |                           |
| 충남 | ○                     | ○         |          | 2023.03.28.               |
| 전북 | 2019.05.20.이후로 회의 미개최 |           |          |                           |
| 전남 |                       |           | 위원장 호선 등 | 2023.04.20.               |
| 경북 | 미개최                   |           |          |                           |
| 경남 | 미설치                   |           |          |                           |
| 강원 | ○                     |           |          | 2022.12.09.               |
| 제주 | 미개최                   |           |          |                           |

#### □ 추천권이 있는 단체는 대체 어디인가?

##### ○ 높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모호한 “각 목의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 시행령에서 구성요건(시행령 제4조의5 4항) 중에서는 2호에 해당하는 ‘다음 각 목의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의 비중이 가장 높음(48.4%). ‘각 목의 단체’란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단체(이하 A) ▷사회복지법인 등의 장으로 구성된 단체(이하 B)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관련 시민단체(이하 C)로 정의(2호 가~다목).
- 그렇지만 각 단체에 대한 정의가 모호하고 구분이 불분명. 근거 법령에 근거하여 해석하면<sup>14)</sup>, B는 사회복지법인 등(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한국사회복지공제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등)의 장으로 구성된 단체이며, A는 이러한 사회복지법인 등에 종사하는 자로 구성된 단체임.

14) 법률 제2조제4조, 시행령 제2조,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6조제46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를 참고

C는 비영리민간단체에 속하면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활동을 하는 시민단체 정도로 정의할 수 있음.

○ 추천권을 가진 단체에 대한 정의가 불명확

- 가령 사회복지사협회의 경우 ‘사회복지법인 등’에 포함되나 시행령에서 B는 ‘이들의 장으로 구성된 단체’라 정의되면서, 협회장들로 구성된 단체가 어디인지 식별하기 어려움. 사회복지사를 회원으로 두는 단체라는 측면에서 협회를 A로 보는 게 타당할 수 있지만, ‘사회복지사 등’에 해당하면서도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없는 노동자는 회원 자격이 없으므로 불충분한 문제가 있음. 결국 사회복지사협회는 해석에 따라 A, B 모두에 속할 수도, 아닐 수도 있게 되는 것임.
- C의 경우에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관련 활동을 하는 시민단체가 과연 실존하는지, 그렇다면 어떠한 단체를 가정한 정의인지 의문이 듦.

○ 시도마다 상이한 해석과 불분명한 추천

- 이렇다 보니 추천권을 가진 단체에 대한 범주 구분이 시도마다 다르게 나타남. 특히 시도 사회복지사협회의 경우 시도마다 해석이 다른데, A, B, C 모두에 다양하게 걸쳐 있음. 또 사회복지협의회와 사회복지 서비스 영역별로 존재하는 수많은 직능협회는 B로 보는 것이 타당하나, 다른 범주로 분류하는 등 제각각임.
- 이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시도는 A, B, C에 대한 범주를 구분하지 않거나, 추천 단체 · 추천인 · 피추천인 · 위촉 근거 등에 대해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음.
- 15개 시도 중 비교적 범주 구분이 확실한 곳은 부산, 광주, 울산 세 곳뿐. 하지만 이 세 곳도 범주에 대한 해석이 서로 다른데, 시도 사회복지사협회를 부산은 A에, 울산은 C로 분류.

[표 8] 추천권을 부여받은 단체

|    |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단체         | 사회복지법인 등의 장으로 구성된 단체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시민단체 |
|----|--------------------------|------------------------------------------------------------------|--------------------|
| 부산 | 사회복지사협회,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시군구) | 사회복지관협회, 장애인복지시설협회, 노인종합복지관협회, 정신요양재활시설협회, 한부모가족복지시설협회, 청소년쉼터연합회 | -                  |
| 광주 | 사회복지협의회                  | 복지협치위원회                                                          | 시민단체협의회            |
| 울산 | 장애인총연합회, 사회복지협의회         | 지역아동센터연합회, 주간보호시설                                                | 사회복지사협회            |

□ 위원회 구성의 심각한 불균형

○ 세부 구성비 (표 9)

- 전체 192명의 시도 위원 중에서 공무원이 37명(19.3%)으로 가장 많음. 이들은 해당 지자체에서 처우개선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자들로서 당연직 위원에 속함.
- 위촉직 위원 구성비 (당연직 위원 제외) : ▷학자 집단(교수 및 연구원, 17.7%) ▷시설장 및 법인의 장(17.2%) ▷사회복지 관련 직능단체의 장이나 부장(12.5%) ▷시설 중간관리자(사무국장·부장·과장, 7.8%) ▷광역 의원(6.3%) ▷협회장(시도 협회의 장이나 부장, 5.7%) ▷변호사 등 법률가(5.2%) ▷협의회장(시도 협의회 장이나 부장, 4.7%) ▷시민사회단체 및 당사자 단체 활동가(2.6%), ▷현장 노동자(1.0%) 순.

[표 9] 시도 처우개선위원회 세부 구성비

| 구분     | 구성                             | 인원(명) | 비중(%) |
|--------|--------------------------------|-------|-------|
| 공무원    | 담당 공무원 등                       | 37    | 19.3  |
| 학자     | 교수, 연구원                        | 34    | 17.7  |
| 시설,법인장 | 시설장, 법인 대표                     | 33    | 17.2  |
| 직능단체장  | 사회복지 관련 직능단체의 장, 부장            | 24    | 12.5  |
| 중간관리자  | 시설 사무국장·부장·과장                  | 15    | 7.8   |
| 의원     | 시도 의원                          | 12    | 6.3   |
| 협회장    | 시도 사회복지사협회의 장, 부장 (일부 시군구 협회)  | 11    | 5.7   |
| 법률가    | 변호사, 노무사                       | 10    | 5.2   |
| 협의회장   | 시도 사회복지협의회의 장, 부장 (일부 시군구 협의회) | 9     | 4.7   |
| 시민단체   | 시민사회단체, 당사자 단체                 | 5     | 2.6   |
| 현장 노동자 | 선임, 사회복지사                      | 2     | 1.0   |
| 계      |                                | 192   | 100   |

○ 시설 중간관리자를 포함한 현장 노동자는 10명 중 1명에 불과

- 위촉직 위원을 크게 ▷전문가(학자 및 법률가), ▷시설장 등(시설장, 법인대표, 각종 협회·협의회·직능단체의 장 또는 부장), ▷현장 노동자(사회복지사, 시설 사무국장·부장·과장) 세 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구성 빈도를 분석(그림 3).
- 그 결과 ▷시설장 등 53.8%(77명) ▷전문가 34.3%(49명) ▷현장 노동자 11.9%(17명). 즉 현장 노동자가 시도 위원으로 활동하는 빈도는 매우 낮음.
- 현장 노동자를 위원으로 위촉한 시도(7개): 대구(1명), 대전(4명), 울산(1명), 전북(2명), 경북(3명), 강원(2명), 제주(3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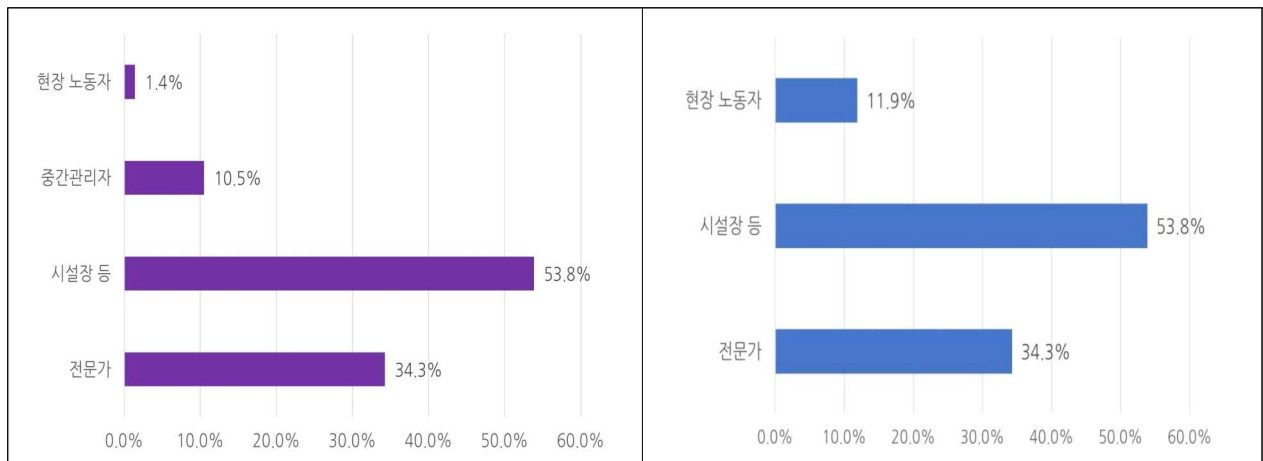
○ 중간관리자를 제외한다면 1.4%밖에 되지 않는 현장 노동자

- 만약 현장 노동자 중에서도 중간관리자 이상 직위에 해당하는 사무국장·부장·과장급을 제외한다면, 일반적인 사회복지사를 위촉한 곳은 대전(2명)이 유일함. 대전의 경우 조례에 요건별 구성비(사회복지기관의 장과 직원을 각각 30% 이상씩)를 정한 곳임.
- 따라서 시도 조례에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사회복지사 등 현장 노동자가 위촉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며 거의 전무하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님.

#### ○ 지나치게 높은 시설장 등 사용자의 비중

- 이에 반해 ‘시설장 등’은 53.8%(77명), 전체 위원 가운데 절반이 넘는 비중을 차지.
- 순수한 시설장이나 법인의 대표는 17.2%에 그치지만, 문제는 시도 사회복지사협회를 비롯하여 협의회, 각종 직능협회의 장과 임원도 대부분 시설장이라는 사실.<sup>15)</sup> 그러다 보니 거의 모든 시도에서 ‘시설장 등’이 전문가나 현장 노동자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그림 4). 이들 대부분은 노조법상 사용자의 위치에 있음.
- 이처럼 불균형한 구성은 직위별 다른 호봉 기준이 존재하는 임금체계 하에서 ‘시설장 등’ 사용자의 입장을 과잉 대표하면서, 현장 노동자에게 상후하박과 같은 차별적인 논의를 조장 또는 방치할 우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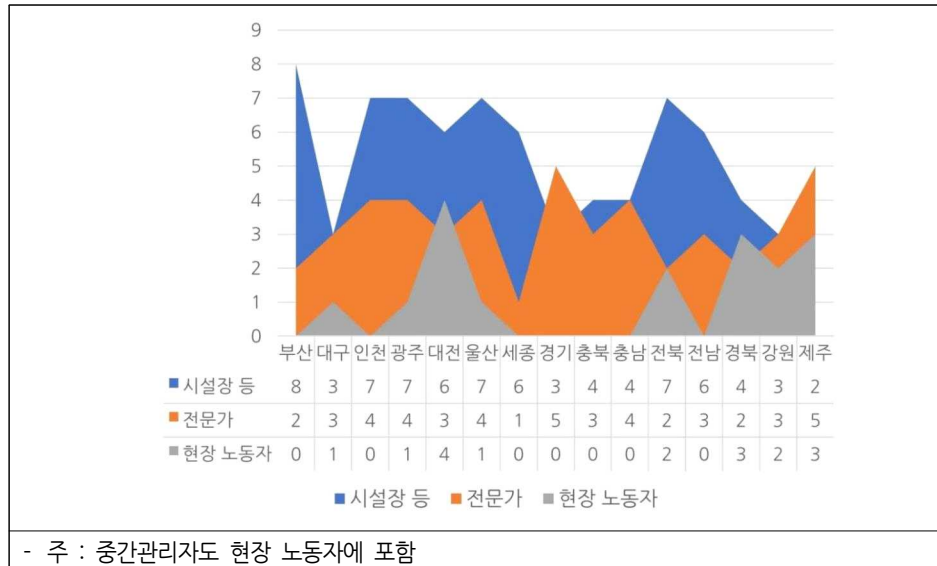
[그림 3] 위촉직 위원의 구성 비율



- 주: (좌) 사무국장·부장·과장을 중간관리자로 따로 분류. (우) 중간관리자도 현장 노동자에 포함

15)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며 기능은 사회복지 조사연구·정책 건의, 사회복지 관련 기관 및 단체 간의 연계·협력·조정, 기타 사회복지사업(교육훈련, 자료수집, 계몽 홍보 외)등임. 중앙협의회와 시도 및 시군구협의회로 구성됨. 그리고 사회복지사협회는 동법 제46조에 기초한 법정단체로서 사회복지사에 대한 전문지식 및 기술 개발·보급, 교육훈련, 조사연구 및 홍보출판사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시도 협회를 산하에 두고 있음

[그림 4] 위촉직 위원 구성 비율(시도별)



## 4. 노동조합의 참여 배제

### 1) 법령상의 문제와 중앙위원회 구성의 편중

#### □ 법령 개정 시 이미 예견된 사태

##### ○ 시행령상 중앙위원회 구성요건

- 중앙위원회의 구성요건도 앞에서 살펴본 지역위원회의 요건과 거의 동일.

시행령 제4조의2(보건복지부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3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이 조부터 제4조의4까지에서 “중앙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중앙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다음 각 목의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가.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단체

나. 사회복지법인등의 장으로 구성된 단체

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관련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

하 같다)

3.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등 노동 관계 법령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4.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의 3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공무원
- ④ 중앙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⑤ 중앙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 ⑥ 중앙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 ○ 현장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참여를 차단하는 구조

- 중앙위원회 규정도 ‘추천권을 가진 단체’ 정의가 모호하여 지역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사용자 집단이 독점하고 공무원과 전문가가 구색만 맞추며, 현장 노동자를 배제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 민주노총은 시행령 개정 전에 의견을 제출하여 ‘사회복지노동자를 대표하는 전국단위노동조합 또는 총연합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추가할 것’을 요구하였으나<sup>16)</sup> 전혀 반영되지 않음.

#### □ 불균형한 구성 및 낮은 대표성

##### ○ 중앙위원회 구성의 편중<sup>17)</sup>

- 확정 명단을 보면 위원 소속은 ▷학식·경험 풍부(3명) : 중앙사회서비스원, 국책연구기관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단체’의 추천(3명): 중앙 및 시도 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교육협의회 ▷‘사회복지법인 등으로 구성된 단체’의 추천(3명):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법인협회, 직능협회 ▷‘시민단체’의 추천(1명): 서비스 이용자 관련 협회 ▷법률가(1명): 모 외투기업 법무팀 ▷공무원(3명):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임.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제1차관.
- 위원 대부분은 ‘시설장 등’ 사용자 또는 전문가에 해당. 게다가 처우개선 관련 시민단체의 추천으로 위촉한 위원은 모 서비스 이용자 단체소속이며, 법률전문가로는 처우개선 사업과 관련이 적은 모 외투기업 법무팀 변호사를 위촉.

##### ○ 낮은 대표성과 당사자성

- 법률의 적용대상인 ‘사회복지사 등’을 대표하는 당사자성과 대표성은 매우 부족.
- 보건복지부의 정보공개 거부로 알 수 없는 사항 : 보건복지부가 어느 단체에 추천을 의뢰했고, 추천된 인사는 누구이며, 피추천인 중 최종 위촉·탈락 근거는 무엇인지.

16) 민주노총 발신 공문(2022.3.4.),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와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참고.

17)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2.12.16.),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적정 인건비 기준 등 논의구조 마련-” 참고.

- 다만 결과로 미루어 추측되는 바는 법정단체인 협회와 협의회 등에 추천을 의뢰했고, 해당 단체는 소속 단체의 장 또는 임원을 스스로 추천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

## 2) 노동조합 참여에 대한 의도적 배제

### □ 노동조합 참여 배경과 기피

#### ○ 총연합단체 참여 배제

- 법률 시행 이후 보건복지부는 민주노총에 위원 추천을 요청(2022.9.22.)하였으며,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관련 위원을 추천(2022.9.29.).
- 그러나 최종 위촉과정에서 탈락. 이에 대한 마땅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음.<sup>18)</sup>

#### ○ 궁색한 기피 논리

- 처우개선 관련 토론회<sup>19)</sup>에서 보건복지부 담당 과장은 관련 질문에 대해 “노동조합의 대표성이 낮아 선정하지 않았다”고 답변.
- 그러나 민주노총만 하더라도 공공운수, 정보경제, 민주일반 등 가맹조직과 지역본부에서 ‘사회복지사 등’을 조직하여 처우개선 활동을 지속하여 왔음. 비록 조직률은 낮지만 대부분 사업장이 영세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대표성이 낮다고만 볼 수 없음.<sup>20)</sup>
- 더구나 현재 위촉된 각종 협회와 협의회 소속의 위원과 견주어 보더라도 대표성이 낮다고 여길 수 없음. ‘시설장 등’ 사용자 집단보다 훨씬 많은 현장 노동자를 포괄·대표.

#### ○ 지역위원회도 노조 배제 : 노동조합에 추천권을 부여하거나 위촉한 시도는 전무.

### □ 다른 행정기관위원회와의 차이

#### ○ 노동조합 참여를 법령으로 보장하는 행정기관위원회 사례

- [표 10]은 보건복지부 소관 행정기관위원회 중 민주노총이 참여하고 있는 위원회 사례를 소개. 이들 위원회는 이 글에서 다루는 위원회와 같이 자문위원회의 성격을 가짐.
- 모두 법률에 ‘노동자(근로자)단체’ 또는 ‘총연합단체’의 추천권을 명시.

18) 다만 경향신문의 인터뷰에서 보건복지부는 민주노총 조합원이 요양보호사, 보육교사 중심이라 ‘사회복지사 등’에 해당하는 노동자들이 적다는 요지로 해명(경향신문.2023.02.07. ‘노조 위원 추천’ 요청해놓고 추천했더니 패싱한 복지부. <https://m.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302072120005#c2b>).

19) 기획토론회 ‘사회복지사 임금수준 어디까지 왔나’(2023.6.23.),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등 공동주최.

20) 30명 미만 사업체의 노조조직률은 0.2%, 30~99명 사업체의 조직률은 1.6%임(2021년 전국노동조합조직현황). 그리고 대부분 30명 미만 사업체에 고용된 ‘사회복지사 등’의 조직률은 약 2% 정도로 추정됨.

[표 10] 보건복지부 소관 행정기관위원회 사례

| 위원회명          | 근거 법률     | 위원장        | 노동조합 참여 보장 근거                                | 민주노총 참여인원 |
|---------------|-----------|------------|----------------------------------------------|-----------|
|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 보건의료인력지원법 | 차관         | ‘노동자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제8조5항1호)                  | 1명        |
|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 보건의료기본법   | 장관         | ‘노동자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제21조3항2호)               | 1명        |
| 국민연금심의위원회     | 국민연금법     | 차관         |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근로자단체가 추천하는 자 4인’ (제5조2항2호) | 2명        |
| 국민연금심사위원회     | 국민연금법     | 공단<br>상임이사 | ‘근로자단체가 추천하는 자’ (제89조2항3호)                   | 2명        |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 국민건강보험법   | 차관         | ‘근로자단체 및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각 2명’ (제4조4항1호)         | 1명        |

- 자료 : 정부조직관리정보시스템 내 2023년 3분기 운영실적 및 민주노총 내부자료
- 주: 민주노총이 참여하는 보건복지부 소관 행정기관위원회(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포함)는 현재 14개이며, 여기서는 일부만 소개함.

○ 유독 다른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

-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단체’와 같은 모호한 용어를 사용.
- 대부분의 ‘사회복지사 등’이 노동자이며, 위원회의 목적이 ‘처우개선’, 즉 노동권에 직결되는 주제를 다루면서도 여타의 행정기관위원회가 사용하는 ‘노동자단체’라는 용어를 명시하지 않음.
- 노동자단체의 참여를 애초에 차단하고자 하는 의도로 볼 수 있음.

□ 윤석열 정부의 노동계 패싱 및 거버넌스의 퇴행

○ 현 정부의 양대노총 배제 흐름

- 윤석열 정부는 노동개혁을 부르짖으며 노동조합, 특히 양대노총을 개혁의 대상으로 취급하며 도를 넘는 ‘노조 때리기’에 집중. 그동안 양대노총이 참여하던 정부위원회에서 배제하거나 새롭게 위원을 위촉하는 과정에서 아예 패싱하는 흐름이 강하게 나타남.
- 2023년 3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민주노총 위원 해촉, 이후 공식 처리.
- 2023년 5월, 건강보험재정운영위 구성 시, 양대노총 배제하고 단위노조에 추천 공문 발송.
- 2023년 6월 보건복지부, 장기요양위원회 임기 만료에 따라 새롭게 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양대노총 배제. 그동안 민주노총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6조2항1호의 ‘근로자 단체를 대표하는 자’ 규정에 따라 참여해왔으나 이번에는 어떠한 통지도 받지 못함.
- 2023년 10월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 예고 : 산업재해보상보

- 협및예방심의위원회의 추천권을 기존 ‘총연합단체’에서 ‘근로자단체’로 변경. 고용노동부 장관은 “일부 총연합단체가 참여권을 독점하고 있다”면서 양대노총을 소수를 대표하는 단체로 폄하.
- 정리하면, 정부는 양대노총 등 총연합단체의 추천권을 축소하고 법령상 추천권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아예 배제하고 있음(이찬진, 2023).<sup>21)</sup>

○ 처우개선위원회도 동일한 맥락에서 노동계 배제

- 법령 개정안은 2022년 6월에 시행되었고, 중앙위원회가 본격적으로 출범한 시기는 2022년 12월임. 이 과정에서 민주노총은 적극적으로 참여 의지를 표명하였으나, 끝내 배제되었음.
- 이 시기는 화물연대 탄압 등 현 정부가 민주노총과 노동조합에 대한 공격의 수위를 고조시킬 무렵.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노동계 패싱 흐름에 적극적으로 동조.
- 결국 위원회가 정부 주도의 정책결정을 위한 도구로 활용되는 과정에서 당사자 이익을 대표하며 관 주도의 결정을 비판하는 세력인 노동조합은 배제의 대상이 된 것임(정혜윤, 2023).

## 5. 결론 : 처우개선위원회 개선과제

### □ 과제 1. 위원회 기능 및 역할 정립

○ 처우개선위원회 의의 재고찰

- 사회복지서비스는 역사적으로 노동자의 희생과 헌신을 미덕으로 여기며 저임금, 높은 노동 강도의 체계에서 성장.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목적으로 2011년 법률이 제정되면서 적정임금 보장 등 처우개선을 도모할 근거가 마련된 것(제3조3항).
- 현행 법률에서는 사회복지사 등의 임금수준이 도달할 목표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을 설정. 시행 초기에는 낮은 임금수준을 극복할 유용한 기준이었으나 수당 등 임금체계가 전혀 다른 직군을 비교 기준으로 삼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더구나 최근 몇 년간 기본급 인상률은 공무원의 낮은 인상률을 그대로 따르고만 있어, 오히려 처우개선을 가로막는 형국.
- 또 매년 보건복지부가 발표하는 가이드라인은 권고 수준에 불과하여 시도 차원의 이행률이 낮고 법률이 천명하는 처우개선이나 적정임금 보장에 대한 현장의 체감도가 매우 낮은 실정.

21) 2023년 국정감사(2023.10.25.)에서 양대노총 배제와 관련된 신동근 보건복지위원장의 질의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과 같이 답변한 바 있음. “심의위원회들은 대부분 국가 정책의 주요 사항을 논의하는 곳인데 국가 정책에 반하고 법률에 반해서 국가 정책에 호응하지 않는 그런 단체가 국가 정책을 논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배제를 했고요.”

- 위원회는 법률이 가진 낮은 실효성의 문제를 해결하고 실질적인 처우개선과 노동권 향상을 견인하는 역할을 해야 할 것. 또 급증하는 사회서비스 · 돌봄 노동의 처우 향상 차원에서 본보기로 기능할 필요.

#### ○ 임금 및 노동조건 심의 기능 정립

- 사회복지사 등은 제도상 모호한 사용-종속 관계에 놓여 있음. 정부가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임금을 비롯한 노동조건을 결정. 반면, 개별 시설이나 법인의 장은 형식적인 사용자의 지위를 가질 뿐, 노동조건에 관한 결정 권한은 미비. 정부-시설 간 위수탁 계약으로 형성된 보조금 관계에 따른 것으로 사회복지 노동자의 임금교섭 등 노동기본권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
- 결국 집단적 노사관계의 정상적인 작동을 위해서는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가 실질적인 지배력을 가진다는 점을 인정하여 정부-노동조합 간 초기업교섭 구조를 마련해야 함.
- 그렇지만 당장 초기업 노정교섭을 실현하기 어려운 조건에서 현실적인 대책으로 위원회의 순기능을 발휘하여야 할 것임. 물론 현재 위원회는 자문위원회에 속하며 법적 구속력을 갖지 못함. 그렇지만 민주적 거버넌스 구축 차원에서 행정부와 참여 주체의 의지에 따라 단순 자문 이상의 심의 기능을 부여하고 행정기관의 의사결정을 깊이 지원할 수 있음(김명환 외, 2008).
- 따라서 처우개선위원회는 사회복지사 등의 임금 및 노동조건에 대한 실질적 심의기구로서의 기능을 분명히 정립하여야 함. 특히 보건복지부의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대한 시도 준수율이 낮고 시도마다 임금수준의 격차가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위원회는 전국 단일임금 체계를 시급하게 도입하면서 상향된 임금기준을 마련하는 데에 역할을 집중해야 할 것. 또 형식적인 중앙-지역위원회 구분 이상으로 중앙-지역 간 역할 분담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 □ 개선과제2. 노동조합의 참여 명문화 및 기능 강화

#### ○ 행정규칙 제정

- 위원회가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이해당사자인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참여가 원만하게 보장되어야 함(박영민·문진영, 2022).
- 단기적으로는 보건복지부가 행정규칙을 정하여, 현재 시행령과 자치법규 적용에서 나타나는 혼선과 모순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 즉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단체’에 대한 보다 명확한 정의와 사무처리 기준을 행정규칙으로 정하여야 할 것.

#### ○ 법령 및 조례 개정 : 현장 노동자 및 노동조합의 적정 참여비율 명시

- 여타 정부위원회처럼 법령과 조례상에 ‘노동자단체’ 또는 ‘총연합단체’의 추천권을 분명하게 명

시하여, 처우개선위원회에 걸맞은 기능을 보장하여야 함.

- 또 대전의 사례(“사회복지기관의 직원을 30% 이상”)와 같이 처우개선의 직접적인 당사자인 현장 노동자의 적극 참여 비율을 명시하여 강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장차 단순 자문·심의 위주의 기능을 탈피하여 실질적인 처우개선 기능을 수행하도록 행정기관 결정에 기속을 갖는 의결위원회인 자문위원회로 승격할 필요.

## 참고문헌

- 김명환·강제상·김동현. 2008. “자문위원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통합적인 관리 체제 구축”. 『현대사회와행정』,18(3).
- 김태운. 2019. “정책공동체 관점에서의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운영 특성에 관한 연구”. 『지방정부연구』,22(4).
- 박영민·문진영. 202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분석: 서울시 25개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사회복지법제연구』,13(2).
- 보건복지부. 2021 사회복지사 통계연감.
- 이찬진. 2023. “복지분야 사회보험 거버넌스 문제와 개선방향”, 보건복지부의 정부위원회 내 노동자 배제, 노동시민사회의 대응과제 토론회(2023.7.3.) 발제문.
- 정혜윤. 2023. “윤석열 정부 하 주요 의사결정기구에서 노동자대표 배제의 문제점과 과제 : 정부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중심으로”, 한국노총중앙연구원 노동N이슈, 2023-08.
- 최성호·정정훈·정상원. 2016. “질적 내용분석의 개념과 절차”, 『질적탐구』,2(1).
-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http://www.law.go.kr)
- 국회회의록 [likms.assembly.go.kr/record](http://likms.assembly.go.kr/record)
- 자치법규포털 [www.elis.go.kr](http://www.elis.go.kr)
- 정보공개포털 [open.go.kr](http://open.go.kr)
- 정부조직관리정보시스템 [www.org.go.kr](http://www.org.go.kr)